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전자금융거래법위반

피 고 인

1.

[redacted]

2.

[redacted]

검 사

[redacted]

변 호 인

법무법인 태유, 담당변호사 조효동(피고인 [redacted] 위하여)

[redacted]

판 결 선 고

[redacted]

주 문

피고인 [redacted] 을 징역 1년에, 피고인 [redacted]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.

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[redacted] 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, 피고인 [redacted] 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.